[별지12] 근저당권설정계약변경계약서 (개정 2019.08.30, 시행 2019.09.16.)

근 담 보

담당	팀장	부점장

근저당권설정계약변경계약서

(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
및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용)

은행은 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
★굵은선 ▭ 표시된 란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★이 변경계약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.

년 월 일

채 권 자 겸 (근저당권자) 주 소 주식회사 은행 (인)

채 무 자 주 소 (인)

근저당권설정자 주 소 (인)

인감대조

인감대조

위 당사자 사이에 이미 설정한 아래 표시 근저당권의 ▭ 를(을)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.

피담보 채무의 범위
변경후 피담보 채무의 범위:

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의 표시

1.설정계약		년 월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
2.공동저당의 표시	등 기	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등기접수 제 호
	물건표시	
	순위	
	소유자	
	등 기	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등기접수 제 호
	물건표시	
	순위	
	소유자	
	등 기	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등기접수 제 호
	물건표시	
	순위	
	소유자	

제1조 근저당권 결산기
(피담보채권의 확정)

한국주택금융공사로의 양도에 의한 자동확정

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채권유동화를 위하여 본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(신탁포함)할 수 있으며 그 양도시점을 근저당권의 결산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, 설정자는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.

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통지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한다.

② 위 양도시점 이후에는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이용할 수 없다.

제2조 채권유동화에 따른 근저당권 이용의 제한

① 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채권유동화를 위하여 피담보채권 및 근저당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.

② 한국주택금융공사로의 양도시점을 근저당권 결산기로 하여 피담보채권을 확정하며 그 이후로는 근저당권은 확정된 특정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추가대출 등의 다른 담보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.

※ 근저당권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.
(기재예시: 수령함)

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?	

상 담 자	직위:	성명:	(인)